

제24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국가산단 환경·
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9 월 13 일

여 수 시 장

2024. 9. 13. 월



여수시 조례 제2133호

붙임 여수국가산단 환경·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국가산단 환경·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

여수국가산단 환경·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공간정보 갱신요인”이란 제1호에 따른 객체의 신설, 증설, 이전, 보수, 폐기, 취급유체 변경 등을 말한다.

제4조제7호 “여수시 대기환경측정망 운영·관리 및 경보제 운영”은 삭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각 호의 시설물 소유, 관리 주체의 장은 ~”을 “제2조제1호에 따른 객체의 소유, 관리 주체의 장은 ~”으로 하고 “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~ 제출하여야 한다.”를 “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 또한, 제2조제5호에 따른 갱신요인이 발생하면 시장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”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의 각 호는 전부 삭제한다.

제7조 제2항의 “제1항에 따라 ~ 제출하여야 한다.”를 “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갱신자료를 제출할 때는 다음 각호의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화재나 폭발사고 등으로 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고 수습 이후 지체 없이 제출한다.”로 한다

제7조제2항 각 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공사(또는 작업) 전
2. 공사(또는 작업) 완료 후 30일 이내.

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“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생신자료를 제출할 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 제1호를 작성 제출 하며,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 건축, 토목, 및 구조 등의 준공도면을 전자적 파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의 [별지서식 1]과 [별지서식 2] 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.
1.~ 4.(생략)	1.~ 4.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“ <u>공간정보 개신요인</u> ”이란 제1호에 따른 객체의 신설, 증설, 이전, 보수, 폐기, 취급유체 변경을 말한다.
제4조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	제4조(기능) -----.
1.~ 6.(생략)	1.~ 6.(현행과 같음)
7. <u>여수시 대기환경측정망 운영·관리 및 경보제 운영</u>	7. <u><삭 제></u>
8.(생략)	8.(현행과 같음)
제7조(자료의 제출)	제7조(자료의 제출)
① <u>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각 호의 시설물 소유, 관리 주체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·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 정보의 열람·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,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</u>	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객체의 소유, 관리 주체의 장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 또한,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신요인이 발생

있도록 시설물의 신설, 보수, 이전, 폐기 갱신요인(신규, 수정, 삭제 등)이 발생하면 30일 이내
시장에게 공간정보 갱신자료를
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4.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갱신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전자적 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<신설>

<신설>

제16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 제7조

하면 시장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4.<삭제>

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갱신자료를 제출할 때는 다음 각호의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다만, 화재나 폭발사고 등으로
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
사고 수습 이후 지체 없이 제출한
다.

1. 공사(또는 작업) 전
2. 공사(또는 작업) 완료 후 30일
이내

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갱신자료를 제출할 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 제1호만 작성 제출하며,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 건축, 토목 및 구조 등의 준공도면을 전자적 파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6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 제7조

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 갱신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자에게는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56조제3항제15호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
제1항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중 지하시설물 갱신자료를 -----

-----.